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주오사카총영사관(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③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중 “대한민국 국내”는 “대한민국 및 일본 국내”로 해석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서 말하는 “현지”라 함은 실제로 공사가 수행되는 “일본”을 의미한다.

**제3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계약금액의 40%까지로 한다. 단, 선금 지급 요청 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한다.

※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하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 지급 등)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엔화(¥)로 한다.

③ 공사 기성금은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요청이 있을 시, 월말 실제 시공 수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지 관련법규에 준하여 필요한 행정수속, 신고, 보고, 현장관리 등을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지 관련법규에 준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계획서(또는 보고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획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지 관련법규에 준하여 필요한 행정수속, 신고, 보고, 현장관리 등을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지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적법한 지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일부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안전 및 환경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현지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적법하게 사용하여, 현지 관계법령에 준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를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 및 환경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하거나 시공상 필요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 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 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본 보안시설 설치공사는 주재국 현지사공사가 건축공사를 준공한 이후 현장에 투입하여 실시하는 보안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건축공사 준공검사에 입회토록 하여 건축공사에서 시공한 보안공사 배선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기존공사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전 계약상대자 포함)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에 관한 관리감독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 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품질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등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현지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 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착공전 준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공사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20조(준공전 준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사무소, 가설전기 및 수도 등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준공 전 시운전 및 준공 후 대사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및 수도 인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본 전기 및 수도의 부지경계선까지 인입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준공 전 현지 규정 등을 숙지하여 준공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도면 등을 작성·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 설계도면 A3 2부(전산화일이 담긴 DVD 포함)
2.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유지관리계획서 3부(전산화일이 담긴 DVD 포함)

**제22조(재해보상)** ① 공사기간 동안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납치, 그 밖에 예기하지 못한 돌발 사태로 인하여 참여기술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상·정신상 또는 재산상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경우와 일본의 특수한 기후·풍토, 그 밖의 생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아국인 참여기술자에 대해 적절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함으로써 상기 피해 발생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동 보험가입서는 착수계 제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